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7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의 검토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여기구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8. 29.
3. 회부연월일 : 2024.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5항 단서).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탄력세율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5항 단서).

현 행	개 정 안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④ (생략) ¹⁾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제2항제2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 <2019. 12. 31.>

5. 삭제 <2019. 12. 31.>

6. 삭제 <2019. 12. 31.>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정안의 검토

지방세의 세율 규정 방식은 ① 법률로 정하여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세율”, ② 법률로 통상 적용되는 세율(표준세율)을 정한 후 조례로 일정한 범위에서 조정(탄력세율)할 수 있는 “표준세율·탄력세율”, ③ 법률로 상한만 정하고 조례로 세율을 정하는 “제한세율”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개정안은 현행법상 ① “일정세율”로 규정되어 있는 원자력발전·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② “탄력세율”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지방세 세목별 세율 규정 방식]

구분	세 목
일정세율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 제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u>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화력발전)</u> , 지방교육세(레저세분)
표준세율 탄력세율	취득세,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화력발전 제외), 지방교육세(레저세분 제외)
제한세율	주민세(개인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그림 생략)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 <2019. 12. 31.>
-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i) “일정세율” 방식은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세목에 적합한 반면 “표준세율·탄력세율” 및 “제한세율”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 세정환경에 차이가 있어 그 특성의 반영이 필요한 세목에 적합할 것인데,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인문·자연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어 지역별로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ii) 동일한 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시설분) 중에서도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표준세율·탄력세율”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탄력세율”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지역자원시설세의 구분]

구 분		과세대상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지하수	먹는 물, 목욕용수, 그 밖의 용수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

다만, 행정안전부는 i) 지역자원시설세는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전제되어 통상 관련 기관간 상충되는 의견을 조율하며 신설되는데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2006년 및 2014년 각각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탄력세율 적용 배제를 조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는 점,²⁾

ii)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신설 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특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24년부터 2배로 인상되었는데, 탄력세율을 도입하면 다시 세율이 최대 50%까지 인상될 수 있어 납세의무자(발전사업자)의 부담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변동]

구분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2006년 (2005.12.개정)	0.5원/kWh (신설)	-
2014년 (2011.3.개정)		0.15원/kWh (신설)
2015년 (2012.12.개정)	1.0원/kWh (2배 인상)	0.3원/kWh (2배 인상)
2024년 (2021.12.개정)		0.6원/kWh (2배 인상)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2) 동일 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시설분) 중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舊지역개발세)는 1992년 도입 당시부터 탄력세율로 규정되었음.

한편, 개정안은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세목은 모두 기존 에너지(석유·석탄·원자력 등)을 활용하는 발전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격상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그 도입여부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3